

급식운영위원회규정

규정번호	3-8-11
제정일자	2012.02.01.
개정일자	2020.06.01.
개정차수	3차
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급식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다.

- 1. 대학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식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식단 편성에 관한 사항
- 4. 식단 메뉴 및 가격책정에 관한 사항
- 5. 식당 위생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생성공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, 예지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 - 1. 교수 2인
 - 2. 학생대표 2인(학생회장, 대의원의장)
 - 3. 직원 2인
- ④ 위원회에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- ⑤ 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예지관장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보고의무)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정)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성공처 예산에서 충당한다.

제8조(기타) 상기 사항이외에 식당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₽ :

이 규정은 2015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초

이 규정은 2020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